



# 가 정 통 신 문



우) 570-360 익산시 부송1로 32

교무실 063)831-8401

FAX 063)831-8404

## 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출결 관리-5.1 이후 변경 사항

유형	등교중지 기간	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
확진자	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	· 입원·격리 통지서 ·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
의심증상자	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	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·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
PCR 검사자 (예.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)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
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	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	· PCR 음성확인서 ·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·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

- (등교중지) 「학교보건법」 제8조, 「학교보건법시행령」 제22조 및 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’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, 출석인정결석 처리

### ※ 코로나 의심 증상자 중요 변경 사항

- 학부모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기록지 증빙서류 제출이 없어짐
-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
- 의료기관에서 치료기간을 명시한 소견서 또는 진단서 날짜까지

- (기저질환)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\*이 있는 학생의 경우,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

\* 만성폐질환, 당뇨, 만성신질환, 만성간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 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(기저질환자 인정 범위 등 상세한 관련 사항은 ‘유·초·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’ 참조)

※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(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를 제출해야 하며,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(소견서)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

※ 등교하지 않는 기저질환 고위험군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

### ※ 기저질환자 중요 변경 사항

- 5월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장애여부가 아닌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출석 인정결석을 판단
- 앞으로는 기저질환학생만 출석인정결석처리(장애학생이라고 무조건 출석인정되지 않음)
- 기저질환 있는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복지카드로 증빙할 수 없음

- (코로나19 백신 접종) **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(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)**, 이상반응 발생 시 **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(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)**, 3일 이상은 **질병결석** 처리

《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**출결처리** 및 **증빙자료** 》

	접종일	접종 후 1일	접종 후 2일	접종 후 3일~
<b>출결</b>	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(결석·지각·조퇴·결과)			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
<b>증빙자료</b>	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	의사 진단서(소견서) 등		의사 진단서(소견서) 등

-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, 원격수업(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)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**출석** 처리 가능
- ※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. 예)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,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
- ※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,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
- ※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,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 가능함

※ **백신예방접종 중요 변경 사항**

- **백신예방접종 기간별 증빙서류 변경**

- **접종일에는 예방접종확인서, 접종후 1-2일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**

2022. 5. 9.

**이 리 부 천 초 등 학 교 장**